

서대문구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3. 8월 기준

연번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비고
	국	부서					
1	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조사업무	불시감사·조사계획, 직무감찰계획등 중앙 및 시 자체감사 계획 관련된 사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조사업무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 검토자료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조사업무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감사결과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등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종료 후 공개 검토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조사업무	공무원 징계대장 ※ 불특정 개인은 공개 가능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조사업무	공직자비리 신고자 명부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담당관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제외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7	담당관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자료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8	담당관	감사담당관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리	병역사항(변동)신고서	제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9	담당관	감사담당관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리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제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10	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1	담당관	홍보담당관	홍보	공공기관 기자단의 기자의 직책, 연락처, 메일주소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2	담당관	홍보담당관	홍보	미 확정된 홍보계획 ※ 종료 후 공개 검토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3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인사 업무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14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인사 업무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15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인사 업무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연번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비고
	국	부서					
16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인사 업무	개인의 징계내역, 징계심의 의결내용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7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인사 업무	징계 대상자의 성명, 부서, 징계일자, 구체적인 비위내용 및 징계 내용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8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인사 업무	확정 전 공무원 표창(유공) 예정자 명단 및 자료 ※ 종료 후 공개 검토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9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인사 업무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휴직 사유, 휴가지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0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인사 업무	급여 및 수당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1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인사 업무	범죄사실 기록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2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인사 업무	특정공무원의 임용일 및 전입일, 자격, 학력, 상훈, 징계, 임용 및 근무경력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3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인사 업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4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직원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5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직원 후생복지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6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청사 설계도면 중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7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서울시 청사 내 보안시설 (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8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9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세부내역, 관리일지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0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1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비밀관리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2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인감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사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3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시민표창	확정 전 시민 표창(유공) 예정자 명단 ※ 종료 후 공개 검토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연번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비고
	국	부서					
34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전 등	인감 및 주민 등록, 여권	인감업무, 주민등록, 여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제3호, 제6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5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북한이탈 주민보호	주민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3호, 제6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6	행정자치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특정 지번의 매매가,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7	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여권	여권관리대장, 여권발급명부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8	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	제3자 특정인이 본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내용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9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전부서	위원회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0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전부서	소송	청구서, 답변서 ※ 종료 후 공개 검토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41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전부서	소송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종료 후 공개 검토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42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전부서	소송	소송 대응방침 ※ 종료 후 공개 검토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43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전부서	소송	증거자료 ※ 종료 후 공개 검토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44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전부서	소송	준비서면, 사실조회 결과 ※ 종료 후 공개 검토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연번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비고
	국	부서					
45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전부서	소송	법률자문 결과 ※ 종료 후 공개 검토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6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전부서	소송	채용 변호사 담당사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7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송	외부법률자문 의뢰내용 및자문결과서 ※ 내부법률자문 결과는 예외적으로공개 가능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8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산	확정되지 않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 내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9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기획	확정 전 연도별 업무계획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0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자금지원(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1	기획재정국	재무과	계약, 용역 등	입찰조서 및 예정가격 조서 등 ※ 종료 후 공개 검토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2	기획재정국	재무과	계약, 용역 등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3	기획재정국	세무과	지방세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제1호, 제6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연번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비고
	국	부서					
54	기획재정국	세무과	지방세	법인 등의 세외수입 관련 납세번호 내역, 금융기관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5	기획재정국	세무과	지방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56	스마트환경생활국	스마트정보과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57	스마트환경생활국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제1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58	스마트환경생활국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9	스마트환경생활국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0	스마트환경생활국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1	스마트환경생활국	스마트정보과	CCTV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CCTV 영상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2	스마트환경생활국	스마트정보과	행정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GPKI) 신청 내용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3	스마트환경생활국	청소행정과	하수처리시설 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개인정보 ※ 회사 대표자 및 대표전화는 공개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4	스마트환경생활국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자료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5	스마트환경생활국	기후환경과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정보	제1호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66	스마트환경생활국	교통행정과	무단방치차량 처리	수사 등의 지위, 방법, 사실내용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7	스마트환경생활국	주차교통과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이의신청, 민원인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8	복지문화체육국	인생케어과	사회복지법인 운영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설립 관련 계좌번호, 은행명, 통장사본 업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9	복지문화체육국	인생케어과	긴급 복지 사업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관련 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0	복지문화체육국	인생케어과	복지 수혜 대상자 관리	대상자 인정 사항 및 관리 명부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1	복지문화체육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상금 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2	복지문화체육국	사회복지과	복지급여	대상자 및 급여지급 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연번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비고
	국	부서					
73	복지문화 체육국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연금 및 수당 지급 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4	복지문화 체육국	사회복지과	저소득한부모	대상자 및 수당 지급 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5	복지문화 체육국	사회복지과	장애인 업무	장애인등록,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 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6	복지문화 체육국	사회복지과	차상위 업무	대상자 및 수당 지급 내역 등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7	복지문화 체육국	사회복지과 및 각 동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 보험 관련 자료 등 확보한 모든정보	제1호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78	복지문화 체육국	사회복지과 및 각 동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상담 및 지원관련 대상자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79	복지문화 체육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개인정보(일반 구민)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지원비용 ※ 전체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0	복지문화 체육국	어르신복지과	학대노인의 보호 관련 업무	학대노인, 가족 및 학대 행위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	제1호	노인복지법제39의12	
81	복지문화 체육국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대상자 및 수당지급 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2	복지문화 체육국	가족정책과	가정폭력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 치료 관련 중 피해자 이름, 연락처, 주소 등개인정보 및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제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83	복지문화 체육국	가족정책과	성폭력 업무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제1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84	복지문화 체육국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	대상자 책정 및 지급 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5	복지문화 체육국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대상자, 아동학대조사 내용 및 피해아동보호조치 사항 등 ※ 단,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공개 검토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6	복지문화 체육국	아동청소년과	보호아동	대상자, 상담 내용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7	복지문화 체육국	문화체육과	문화재 보수 관련 사항	문화재 보수 관련 평면도, 단면도 등	제5호, 제7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88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신통개발과	각종 개발 계획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확정고시 이전 도시계획 관련 자료 등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완료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9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신통개발과	재정비 관련	개발관련 주민동의서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90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도시, 경관 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제1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2	
91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계획 확정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관련 정보	제8호, 제5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2	도시정비국	주택과	이행강제금	대상자, 주소, 금액 등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연번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비고
	국	부서					
93	도시정비국	건축과	건축허가	건축허가 도면 중 평면도, 단면도	제6조, 제7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94	안전건설국	재난안전	총무계획 및 을지연습	기본 계획 수립 관련 비밀 문서 내용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5	안전건설국	재난안전	민방위	민방위 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교육훈련 실시 등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6	안전건설국	도시경관과	보상업무	보상협의 관련 서류	제8호, 제6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7	안전건설국	도시경관과	도로점용	도로점용 신청서, 점용료 부과관련 개인 신상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98	안전건설국	도로과	도로계획 및 관리	확정 전 도시계획 관련 검토안, 보고서 등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99	안전건설국	치수과	하수처리시설 업무	하수 공사 설계내역서 등 영업상의 노하우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0	안전건설국	푸른도시과	공원 조성	공원 조상 관련 보상협의 관련 서류	제8호, 제6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1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업소	업소대표자의 개인 인적사항 * 대표의 이름과 상호명, 상호의 전화번호는 공개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2	보건소	지역건강과	모자보건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3	보건소	지역건강과	영유아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4	보건소	지역건강과	난임 부부	수술지 비원 대상자 및 지원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5	보건소	지역건강과	산모 지원	고위험 산모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내역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6	보건소	지역건강과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7	보건소	의약과	정신질환자의 정보보호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하면서 알게된 개인정보 등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8	보건소	의약과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 보호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 관한 기록관련 자료 등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9	공통사항	전부서	소송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110	공통사항	각 동	긴급지원대상 관리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제1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111	공통사항	전부서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번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비고
	국	부서					
112	공통사항	전부서	업무상 개인정보 취득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제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113	공통사항	전부서	자금지원(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114	공통사항	전부서	위법행위 등 신고	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참고인 명단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15	공통사항	전부서	각종연구용역	최종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 성과 등	제5호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16	공통사항	전부서	위원회 운영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원별 발언내용, 회의록 등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17	공통사항	전부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확정 전,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연구용역중간 보고, 심사위원 부호자명단, 발표 전 위원회 보고서 ※ 확정 후 공개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18	공통사항	전부서	감독,지도점검	불시 지도점검, 단속, 조사 계획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19	공통사항	전부서	감독,지도점검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20	공통사항	전부서	민원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와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 시 제외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21	공통사항	전부서	각종위원회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주소,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22	공통사항	전부서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개인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범죄사실기록, 납세기록,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23	공통사항	전부서	개인정보(공무원)	개인 급여 및 수당내역, 자택주소, 개인이메일, 개인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의료기록, 사생활로인한 징계내역, 개인 평가기록, 인사기록카드, 개인평가기록,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 단순 통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연번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비고
	국	부서					
124	공통사항	전부서	개인정보(일반 구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개인이메일,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여부, 보조금 수령여부,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여부, 종교,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25	공통사항	전부서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	업체 핵심산업기술, 내부 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기술평가 결과, 용역참여고급기술자의경력 등	제7호	공개할 경우 해당 단체, 기업, 업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126	공통사항	전부서	법인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 중 -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약력, 재산목록, 등기소 및 금융기관 등 증명서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27	공통사항	전부서	민원접수처리	민원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28	공통사항	전부서	소송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 소장 ※ 확정 후 공개 검토 필요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 정보공개사항의 시기, 대상자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